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제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1조, 안 제2장,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부 정비 (안 제4조)

○ 조문 정비 (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2026년 11월 20일 ~ 12월 10일(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과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시설의 장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5. 파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6.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제11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과장”으로, “담당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③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 940-5229
입 안 자	청년청소년과장	유 연 욱
	청 소 년 팀 장	김 명 기
	담 당 자	이 수 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청소년정책위원회---------- ---------- ---------- ---------- ---------- ----------.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장 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파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 ---------- ---------- ----------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조(구성) ① ---------- ---------- ----------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및 시설의 장	<삭 제>
2. 파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의 장	<삭 제>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4.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삭 제>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삭 제>
6.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삭 제>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과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시설의 장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5. 파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6.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제11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1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 담당 과장---------- 담당팀장----.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시행일: 2026. 10. 29.]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8.>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 4. 28.>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 4. 28.>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08. 5. 30., 2012. 2. 17., 2019.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7. 1.,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9. 10. 4.>
4. 삭제 <2019. 10. 4.>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4.>
[전문개정 2012. 2. 1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1.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및 시설의 장
2. 파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6.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 5. 30., 2010. 10. 4.,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7.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0. 4.>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心神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0. 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7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0. 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10.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08. 5. 30.]

[제8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전문개정 2008. 5. 30.]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 10. 4.>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

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8. 2. 9., 2025. 9. 30>

[제14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 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 별 여건(인구, 학교 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제13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10. 4.>]

제15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제16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6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의무에 위배된 경우

[본조신설 2019. 10. 4.]

제17조(증표 교부)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지참하고 관계 청소년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0. 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12. 2. 17., 2019. 10. 4.]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 지도위원이 추천한 지도위원으로

파주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4장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9조(청소년참여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4.>

[본조신설 2001. 8. 10.]

[제목개정 2019. 10. 4.]

[제21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20조(구성)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2023. 12.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④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2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19. 10. 4.>

[제22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21조(임기) (제23조에서 이동 2019.10.04)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2023. 12. 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호선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본조신설 2001. 8. 10.]

[제23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10. 4.>]

제22조(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1. 8. 10., 2008. 5. 30., 2019. 10. 4.>

1. 파주시 및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1. 8. 10.]

[제24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2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10. 4.>]

제23조(회의)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2. 2. 17., 2019. 10. 4.>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본조신설 2001. 8. 10.]

[제25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2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10. 4.>]

제23조의2(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5장 보칙

제24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파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1. 6. 17., 2012. 2. 17., 2019. 10. 4., 2019. 12. 27.>

[전문개정 2001. 8. 10.]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12. 2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27조(준용)

삭제 <2019. 10. 4.>

부칙(2025. 9. 30.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1)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62			
정 책 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당자명	이수미	전화번호	031-940-522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11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청년청소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청년청소년과장 귀하

(2)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62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수진
주관부서	청년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임기제마급 이수미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1.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3) 규제영향분석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 당	팀장 김명기 담당자 이수미
3. 관련법령 등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4.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장 및 제3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부 정비(안 제4조) ○ 조문 정비(안 제1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